[붙임 2] 관련 법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 중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관할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1.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없도록 건조된 선박 2. 군함 및 경찰용 선박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소형 선박 가. 선박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 나. 수색, 경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 4.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 선박 5.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선박 6.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해당 선박	**제3조(소형 선박)** ①법 제3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바우스프릿(bowsprits), 붐(boom), 범킨(bumpkins) 및 난간 등을 제외한 선체(船體)의 길이를 말한다]가 50미터 미만으로서 설치할 수 있는 선박평형수탱크의 총용적(이하 "선박평형수 용량"이라 한다)이 8세제곱미터 이하인 선박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선박 2. 경주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선박
제5조(입항 보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미지정] 제5조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법 제5조에 따라 입항 보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과 동시에 입항 보고를 할 수 있다. [시행미지정] 제10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시행미지정]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
BALLAST WATER REPORTING FORM

1. 선박 정보
VESSEL INFORMATION

2. 선박평형수
BALLAST WATER

선박명: Vessel Name	용도: Type	IMO 번호: IMO Number	(단위: ㎥, MT, LT, ST) Specify Units
선박소유자: Owner	총톤수: Gross Tonnage	호출부호: Call Sign	총 선박평형수 보유량: Total Ballast Water on Board
국적: Flag	도착일: Arrival Date	대리점: Agent	
이전 항구 및 국가: Last Port and Country		도착 항구: Arrival Port	선박평형수용량: Total Ballast Water Capacity
다음 항구 및 국가: Next Port and Country			

3. 선박평형수탱크
BALLAST WATER TANKS

선내에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해당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실행은? 예 ☐ 아니요 ☐
Ballast water management plan on board? Yes No Management plan implemented? Yes No

선박평형수탱크의 수 _____ 선박평형수 적재 탱크의 수 _____ 선박평형수를 싣지 않은 경우에는 제5호로
Total number of ballast tanks on board No. of tanks in ballast If none in ballast go to no. 5

관리된 선박평형수탱크의 수 _____ 관리되지 않은 선박평형수탱크의 수 _____
No. of tanks managed No. of tanks not managed

4. 선박평형수 이력: 입항 항만국 안에서 배출예정인 모든 선박평형수탱크를 기록(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호로)
BALLAST WATER HISTORY: Record all tanks that will be deballasted in port state of arrival; If none go to no. 5

탱크/화물창 (수원/탱크별로 구분하여 기재) Tanks/Holds (list multiple sources/ tanks separately)	주입 선박평형수원 BW SOURCE				선박평형수관리의 실행 BW MANAGEMENT PRACTICES						선박평형수의 배출 BW DISCHARGE			
	날짜 Date dd/mm/yy	항구 또는 경도・위도 Port or LAT.LONG.	용량 Volume (units)	온도 Temp (units)	날짜 Date dd/mm/yy	종료지점 경도・위도 Endpoint LAT.LONG.	용량 Volume (units)	교환율 Exch. (%)	수심 Depth (m)	방법 Method (ER/FT/OT)	날짜 DATE dd/mm/yy	항구 또는 경도・위도 Port or LAT.LONG	용량 Volume (units)	염도 Salinity (units)

Ballast Water Tank Code: Forepeak=FP, Aftpeak=AP, Double Bottom=DB, Wing=WT, Topside=TS, Cargo Hold=CH, Other=O
Ballast Water Management Method Codes: Empty and Refill=ER, Flow Through= FT, Onboard Treatment System= OT

선박평형수 교환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통제조치를 기재: _____
If managements were not conducted, state other control action(s) taken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_____
If none, state reason why not

5. 선박평형수관리협약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선박에 IMO 협약을 갖추어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on board?

책임 선박직원의 직책・성명 및 서명: _____
Responsible Officer's name and title(printed) and signature

210㎜×297㎜[백상지(80g/㎡)]